

의안번호	제 33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이양섭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월 15일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양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월 15일

발 의 자 : 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박우양·

이의영·황규철·윤은희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기존에 설치된 ‘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가 ‘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. 또한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‘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 ⇒ ‘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로 변경(안 제4조)
- 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⇒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5조, 제7조)
- 별지서식 중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수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를 “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시·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를 “시·군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5항에 따라 읍·면·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3조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제5조(경영안정지원) 도지사는 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 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벼 재배농업인</u>으로서 「<u>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최대 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.</p>	<p>제1조 ~ 제3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</u>-----.</p> <p>제5조(경영안정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(생 략)</p> <p>제6조(생 략)</p> <p>제7조(지원 신청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「<u>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(대상 선정) ①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<u>시·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</u>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.) 심의를 거쳐 시장·군수가 선정한다. 다만, 제5조제2호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 신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「<u>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대상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<u>시·군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5항에 따라 읍·면·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[시행일 : 2015-01-01]

제8조(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)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·면장 또는 동장(이하 "읍·면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작농지가 같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·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,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·면·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